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비공식번역본)

ISPM 5

식 물 위 생 용 어 집
Glossary for Phytosanitary Terms

(2024)

FAO/IPPC 사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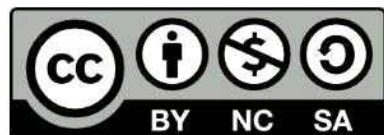
인용 시 요구되는 문구:

FAO. 2024. *Glossary of phytosanitary terms*. International Standard for Phytosanitary Measures No. 5. Rome. FAO on behalf of the Secretariat of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이 정보물 내에 적용된 명칭(designation)과 자료의 표현(presentation)은, 법적 또는 어느 나라의 개발 상태, 영토, 도시 또는 지역 또는 이들의 권한과 관련되거나 또는 국경 또는 영역의 경계 설정과 관련된, UN의 세계 식량 및 농업기구(FAO)의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의견 표명을 전혀 의미하지 않는다. 특정 회사 또는 생산자의 물품에 대한 언급은, 이들이 특허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이들이, 언급되지 않은 유사한 다른 것에 우선하여, FAO에 의해 승인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정보물에 표현된 의견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FAO의 의견이나 정책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 FAO, 2024



일부 권리가 보호되어 있다. 이 산물(work)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ical-ShareAlike 3.0 IGO licence (CC-BY-NC-SA 3.0 IGO;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3.0/igo/legalcode>)에 따라 사용 가능하다.

적절하게 인용된다면, 이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이 산물은 비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복사, 재배포와 적용될 수도 있다. 이 산물의 사용에 있어서 FAO가 특정 기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허가했다는 어떤 시사(suggestion)도 있어서는 않된다. FAO의 로고 사용은 허가되지 않는다. 이 산물이 적용된다면, 동일 또는 동등한 Creative Commons licence 하에서 허가(licensed)를 받아야만 한다. 이 산물의 번역이 수행된다면, 필요한 인용과 더불어 다음의 disclaimer를 포함해야 한다: “이 번역은 UN FAO가 수행한 것이 아니다. FAO는 번역의 내용이나 정확함에 책임이 없다. 원 영어본이 원본

‘authoritative edition’이 되어야 한다.”

이 라이선스 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 발생은, 여기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이선스 8항에서 설명된 중재와 조정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적용할 수 있는 중재 규칙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http://www.wipo.int/amc/endml> 조정 규칙이고, 조정은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의 조정 규칙에 따라 수행될 것이다.

제삼자 자료. 표, 그림 또는 이미지 같은 자료들을 제3자에 제공되도록 (attributed) 재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재사용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에 책임이 있다. 이 산물의 제삼자가 소유한 요인의 저작권 위반으로부터 야기되는 청구(claim) 위험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판매, 권리와 licensing. FAO 정보물은 FAO 웹사이트 (www.fao.org/publications)에서 찾을 수 있고, publication-sales@fao.org를 통하여 구매 가능하다. 상업적 사용 요청은 www.fao.org/contact-us/licence-request를 통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권리와 licensing 관련 질문은 copyright@fao.org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ISPM이 재생산되는 경우 최신의 채택된 IPSMs 버전이 www.ippc.int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해야 한다.

공식적인 참고문헌, 정책 결정 또는 분쟁 회피와 해결 목적을 위하여 인용되는 IPSMs는

<http://www.ippc.int/en/core-activities/standards-setting/ispm/#614> 하에
출간된 것이다.

UN 식량농업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출판하였다.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본 출판물은 본래 UN FAO에서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 기준)"로 영어로 출판되었다. 본 한국어 번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마련하였다."

“이 정보물 내에 적용된 명칭(designation)과 자료의 표현(presentation)은, 법적 또는 어느 나라의 개발 상태, 영토, 도시 또는 지역 또는 이들의 권한과 관련되거나 또는 국경 또는 영역의 경계 설정과 관련된 UN의 세계 식량 및 농업기구(FAO)의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의견 표명을 전혀 의미하지 않는다. 특정 회사 또는 생산자의 물품에 대한 언급은, 이들이 특허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이들이, 언급되지 않은 유사한 다른 것에 우선하여, FAO에 의해 승인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정보물에 표현된 의견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FAO의 의견이나 정책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2024 (한국어 번역)"

"© FAO, 1995–2024 (영문판)"

출간 이력

이 부분은 본 기준의 공식적인 부분은 아님

1986-05 지역식물보호기구들(RPPOs)이 *Core vocabulary of phytosanitary terms* 작성을 추천함

1988-02 RPPOs가 검토하여 북미식물보호기구(NAPPO)와 유럽 및 지중해 식물보호기구(EPPO) 의견수렴을 승인함

1989-09 RPPOs가 *Core vocabulary of phytosanitary terms* 초안을 작성함

1990 FAO가 FAO *식물위생용어집(Glossary of phytosanitary terms)*을 출간;
FAO Plant Protection Bulletin 38(1)

1991-05 TC-RPPOs가 *식물위생용어집* 주제를 승인(1991-001)

1993-05 TC-RPPOs가 조건들을 수정하고 FAO 용어 작업단(GWG) 을 구성할
것을 권고

1994-02 GWG 1차 회의

1994-03 CEPM-1이 문구를 수정하고 새로운 용어를 추가할 것에 동의

1995-05 CEPM-2는 수정된 *식물위생용어집*을 ISPM으로 출간할 것을 결정

1996-05 CEPM-3는 *식물위생용어집* 문구를 수정

1997-10 CEPM-4는 문구를 수정하고 FAO 29차 총회가 **the Glossary**를
승인

1999-02 GWG가 Glossary를 수정

1999-05 CEPM-6가 Glossary를 수정하고 채택을 권고

1999-10 ICPM-2가 **ISPM 5**. 1999로 채택

1999-09 GWG가 기준을 수정

2000-05 ISC-1가 기준을 수정하고 의견수렴을 승인

2000-06 의견수렴 실시

2000-11 ISC-2가 기준을 수정하고 의견수렴을 승인

2001-04 ICPM-3가 수정된 **ISPM 5**. 2001을 채택

2000-03 및 2001-03 GWG가 기준을 수정

2001-05 ISC-3가 *식물위생용어집 검토 및 업데이트* 작업지시서 1을 승인

2001-05 ISC-3가 기준을 수정하고 의견수렴을 승인

2001-06 의견수렴 실시

2001-11 ISC-4가 채택을 위하여 기준을 수정
2002-03 ICPM-4가 개정된 ISPM 5. 2002 채택

2002-02 GWG가 기준을 수정
2002-05 기준위원회(SC)가 기준을 수정하고 의견수렴을 승인
2002-06 의견수렴 실시
2002-11 SC가 채택을 위하여 기준을 수정
2003-04 ICPM-5가 수정된 ISPM 5. 2003 채택

2003-02 GWG가 기준을 수정
2003-05 SC-7이 TPG의 권고에 동의
2003-09 GWG가 기준을 수정
2003-11 SC는 기준을 수정하고 새로운 용어를 추가할 것을 요청
2004-04 GWG가 기준을 수정
2004-04 SC는 기준을 수정하고 의견수렴을 승인
2004-06 의견수렴 실시
2004-11 SC는 채택을 위하여 기준을 수정
2005-04 ICPM-7가 수정된 ISPM 5. 2005 채택

2004-10, 2005-10 GWG가 기준을 수정
2006-05 SC는 기준을 수정하고 의견수렴을 승인
2006-06 의견수렴 실시
2006-11 SC는 채택을 위하여 기준을 수정
2007-03 CPM-2가 수정된 ISPM 5. 2007 채택

2006-03 CPM-1은 용어집을 위한 기술패널(TPG) 설치
2006-10 TPG 1차 회의 개최, 기준 수정
2007-05 SC가 기준을 수정하고 의견수렴을 승인
2007-06 의견수렴 실시
2007-11 SC가 초안을 승인하고 채택을 위하여 제출
2008-04 CPM-3가 수정된 ISPM 5. 2008 채택

2007-10 TPG가 기준을 수정

2008-05 SC-7이 기준을 수정하고 의견수렴 승인
2008-06 의견수렴 실시
2008-11 SC가 초안을 승인하고 채택을 위하여 제출
2009-03 CPM-4가 수정된 ISPM 5. 2009를 채택

2008-10 TPG가 기준을 수정
2009-05 SC가 기준을 수정하고 의견수렴 승인
2009-06 의견수렴 실시
2009-11 SC가 초안을 승인하고 채택을 위하여 제출
2010-03 CPM-5가 수정된 ISPM 5. 2010

2010-03 CPM-5는 인지하고 IPPC 사무국은 보충서 1(영어버전)에 미세한 수정을 적용
2011-3 CPM-6는 인지하고 IPPC 사무국은 “(소독처리의) 효과”, “정착”, “유입”, “확산”, “규제지역”, “화물”, “검사”, “검역”과 보충서 1,4(영어 버전)에 미세한 수정을 적용
2009-06 TPG는 채택된 기준들의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검토하기 시작
2010-10 TPG가 수정 초안 작성
2011-05 SC가 초안을 수정하고 의견수렴 승인
2011-06 의견수렴 실시
2011-11 SC가 초안을 승인하고 채택을 위하여 제출
2012-03 CPM-7가 수정된 ISPM 5. 2012

2013-03 CPM-8은 인지하고, IPPC 사무국은 “(환경으로) 방사” “(특정 지역에서) 시정활동 계획”, “위험지역”, “공적방제”, “(검역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험”,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험”, “(검역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험평가”,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험평가”,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험분석” “식물위생 조치”, “식물검역”, “식물위생규제”, “규제지역”, “규제비검역병해충”과 보충서 2(영어 버전)에 미세한 수정을 적용
2012-10 TPG는 수정들에 대한 초안 작성
2013-06 의견수렴 실시
2014-05 SC-7가 주요 우려에 대한 의견수렴(SCCP)을 위하여 초안을 승인

2014-06 SCPP 실시

2014-11 SC가 초안을 승인하고 채택을 위하여 제출

2015-03 CPM-10가 수정된 ISPM 5. 2015

2015-03 CPM-10은 인지하고 IPPC 사무국은 “구근과 괴경”, “절화와 절지”,
“과실과 채소”, “곡물”, “시험관 식물”, “종자”, “목재”에 미세한 수정을 적용

2015-05 IPPC 사무국은 “병해충 무발생지역”과 “병해충 저발생지역”의 정의에
있는 오류를 정정

2013-02 TPG가 수정 초안 작성

2014-05 SC가 기준을 수정하고 의견수렴 승인

2014-07 의견수렴 실시

2015-05 SC-7가 SCCP를 승인

2015-06 SCPP 실시

2015-11 SC가 초안을 승인하고 채택을 위하여 제출

2016-04 CPM-11가 수정된 ISPM 5. 2016 채택

2016-04 IPPC 사무국은 TPG 2015-12 결정에 따라, 미세한 수정의 “재
검토”에 포함 되지 않은 정의의 근거(source)들을 조정

2017-04 CPM은 인지하고 IPPC 사무국은 “실질적으로 없는” 용어에 미세한
수정을 적용하고, 적절한 경우 “보호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대체

2014-12 PG가 2015 SC 승인을 위하여 초안을 수정

2015-05 SC가 기준을 수정하고 의견수렴 승인

2015-12 TPG가 2016 SC 승인을 위하여 초안을 수정

2016-05 SC가 1차 의견수렴을 승인

2016-07 1차 의견수렴 실시

2016-12 TPG는 의견수렴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2016 수정 초안을
조정; 또한 “위험지역”이 IPPC 협약 2조에 정의되어 있고 이 정의가
틀리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을 2016 수정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
이 개정이 설명할 수 있는 오해(misunderstanding)가 이 용어의
“합의된 해석”에 도움이 될 만큼 충분히 중요하지 않음. 대신 ISPM
5의 Explanatory document (the Annotated Glossary) note 1이 “위험
지역” 용어가 생태 보호 면에서 환경적으로 보호된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잘 못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도록 수정
될 것임

2017-05 SC-07이 2차 의견수렴을 승인

2017-10 간사가 의견에 기초하여 수정 초안을 검토함

2017-11 SC가 CPM 채택을 위하여 2015 및 2016 수정 초안을 검토하고 권고

2018-04 CPM-13이 수정된 ISPM 5. 2018 채택

2018-04 CPM은 인지하고 IPPC 사무국은 “detention(유치)” 용어에 대한
미세한 수정을 적용함

2019-01 IPPC 사무국이 개정 중에 있는 용어(a*로 표시)들을 업데이트함

2016-12 TPG가 수정 초안 작성

2017-05 SC가 기준을 수정하고 일차 의견수렴 승인

2017-07 일차 의견수렴 실시

2017-12 TPG가 수정

2018-05 SC-7이 2차 의견수렴을 승인

2018-07 2차 의견수렴 실시

2018-10 TPG 간사와 부간사가 수정

2018-11 SC가 초안을 승인하고 채택을 위하여 제출

2019-04 CPM-14가 수정된 ISPM 5. 2019 채택

2019-06 IPPC 사무국은 용어집 “survey(조사)”의 오타를 정정

2017-12 TPG가 수정 초안 작성

2018-05 SC가 기준을 수정하고 일차 의견수렴 승인

2018-07 일차 의견수렴 실시

2018-12 TPG가 검토

2019-05 SC-7이 검토하고 2차 의견수렴을 승인

2019-07 2차 의견수렴 실시

2019-10 TPG 간사와 부간사가 검토

2019-11 SC가 초안을 승인하고 채택을 위하여 제출

2021-03 CPM-15가 수정된 ISPM 5. 2021 채택

2021-04 IPPC 사무국은 경미한 철자 오류를 정정하고, FAO 양식에 맞추어

구두점과 인용을 업데이트

- 2021-05 IPPC 사무국은 “(품목으로서의) 목재”에서 철자를 수정
- 2018-12 TPG는 2019 SC 승인을 위하여 수정안 작성
- 2019-05 SC가 검토하고 일차 의견수렴을 승인
- 2019-11 TPG가 2020 SC 승인을 위하여 수정안 작성
- 2020-04 SC는 온라인 코멘트 시스템을 통하여 2020 수정을 검토하고 일차
의견수렴을 승인 (2020_eSC_May_17)
- 2020-07 일차 의견수렴 실시
- 2020-12 TPG 검토
- 2021-05 SC-7이 이차 의견수렴 승인
- 2021-07 2차 의견수렴
- 2021-11 SC가 초안을 승인하고 채택을 위하여 제출할
- 2022-04 CPM-16은 수정된 ISPM 5. 2022 채택

- 2022-04 CPM-16은 인지하고 IPPC 사무국은 “병해충저발생지역” 용어에
대한 경미한 수정을 적용
- 2022-06 IPPC 사무국은 “채택” 부분에 있는 용어를 정정
- 2022-07 IPPC 사무국은 “발견 조사(detection survey)” 정의의 오타를 정정

- 2021-01 TPG 수정을 제안
- 2021-05 SC가 2021년 수정을 OCS를 통하여 수정하고 1차 회원국 의견
수렴을 승인
- 2021-07 1차 회원국 의견수렴
- 2021-12 TPG가 검토
- 2022-05 SC-7이 OCS를 통하여 수정하고 2차 회원국 의견수렴을 승인
- 2022-07 2차 회원국 의견수렴
- 2022-11 SC가 초안을 채택을 위하여 제출할 것을 승인
- 2023-03 CPM-17 개정된 ISPM 5. 2023 채택

- 2023-04 IPPC 사무국은 소소한 오타를 정정 (“ D_{min} ”에 이태리체와 아래 기입
적용 포함) 하고 새로운 IPPC 스타일에 맞도록 대문자, 구두점과 인용을
업데이트
- 2023-07 IPPC 사무국은 “긴급조치” 용어의 정의의 오타를 정정

2021-12 TPG가 2022 수정을 제안
 2022-05 SC가 OCS를 통하여 수정을 검토하고 1차 회원국 의견수렴을 승인
 2022-07 1차 회원국 의견수렴
 2022-11 SC는 2021 수정 “일반 예찰”, “특정 예찰”, “예찰”, “검사”, “정밀 검사”와 “합격(화물의)”을 검토하고; “정밀검사”와 “검사”를 TPG (그리고 SC-7)에 검토를 의뢰하고; “일반 예찰”, “특정 예찰”, “예찰”과 “합격(화물의)”을 SC-7에 검토를 의뢰.
 2022-12와 2023-03 TPG가 2021 수정에 대하여 검토하고 권고를 SC-7에 보냄
 2023-05 SC-7은 2022 수정을 2차 회원국 의견수렴을 승인; 2021 수정을 2022 수정의 일부분으로 3차 회원국 의견수렴을 승인 “일반 예찰”, “예찰” 그리고 “정밀검사”; 그리고 SC에 “특정 예찰”, “합격 (화물의)” 그리고 “검사”를 채택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권고함.
 2023-07 2차 및 3차 회원국 의견수렴
 2023-10 TPG 간사와 부간사가 2차, 3차 회원국 의견을 검토하고 SC에 권고를 제공
 2023-11 SC가 수정하고 채택을 위한 승인
 2024-04 CPM-18이 개정된 ISPM 5, 2024를 채택.

2024-04 IPPC 사무국이 인용문헌 스타일을 새로운 FAO 스타일에 맞도록 업데이트하고 미미한 오타를 수정 (정의의 “수피가 제거된 목재”, “감염”, “공적” 그리고 “소독처리”에 bold 적용)

보충서 1

1999-10 ICPM-2는 공적방제(1999-002) 주제를 추가
 2000-03 전문가 작업단(EWG)이 초안을 작성
 2000-05 ISC-1이 초안을 수정하고 의견수렴을 승인
 2000-06 의견수렴 실시
 2000-11 ISC-2는 채택을 위하여 초안을 승인
 2001-04 ICPM-3는 ISPM 5 보충서 1을 채택
 ISPM 5. 보충서 1. *규제병해충의 공적 방제 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지침* (2001)

2005-03 ICPM-7은 *널리 분포하지 않는*을 주제(2005-008)로 추가 (ISPM 5 용어집의 보충서)
 2006-05 SC는 작업지시서 33을 승인
 2008-05 SC-7은 초안을 검토
 2011-05 SC가 의견수렴을 승인
 2011-06 의견수렴 실시
 2011-11 TPG가 의견을 검토
 2011-11 SC가 ISPM 보충서 초안을 승인
 2012-03 CPM-7인 수정된 ISPM 5 보충서 1을 채택
ISPM 5. 보충서 1. “공적 방제”와 “널리 분포하지 않는” 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지침 (2012)

보충서 2

2001-04 ICPM-3은 *경제적 중요성 정의*(2001-004) 주제를 추가
 2002-02 GWG가 초안을 작성
 2002-05 SC가 초안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승인
 2002-06 의견수렴 실시
 2002-11 SC는 채택을 위하여 초안을 검토
 2003-04 ICPM-5는 ISPM 5 보충서 2을 채택
ISPM 5. 보충서 2. “잠재적 경제적 중요성”과 환경적 고려를 위한 참고를 포함한 관련 용어의 이해에 대한 지침 (2003)

부록 1

2005-03 ICPM-7은 IPPC와 CBD(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협력 프로그램을 결정함
 2006-04 CPM-1은 사업 프로그램 진전을 평가하기로 합의(2006-033)
 2006-10 TPG는 초안을 작성
 2007-05 SC는 TPG에 CBD 용어에 대한 초안을 작성할 것을 요청
 2007-10 TPG는 초안을 작성
 2008-05 SC는 초안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승인
 2008-06 의견수렴 실시
 2008-11 SC는 채택을 위하여 초안을 검토
 2009-03 CPM-4는 ISPM5 부록1을 채택

ISPM 5. 부록 1. 식물위생용어집과 관련된 생물다양성협약의 용어 (2009)

출간 이력은 최종으로 2023-07에 업데이트됨

차례

채택

서론

범위

목적

참고문헌

요건의 개요

식물위생 용어 및 정의

보충서 1: “공적 방제”와 “널리 분포하지 않는” 개념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지침

서론

범위

참고문헌

정의

배경

요건

1. 일반 요건
 - 1.1 공적 방제
 - 1.2 널리 분포하지 않는
 - 1.3 공적 방제를 적용하기 위한 결정
2. 특정 요건
 - 2.1 기술적 정당성
 - 2.2 비차별
 - 2.3 투명성
 - 2.4 시행
 - 2.5 공적 방제의 강제적 특성
 - 2.6 적용 지역

2.7 공적 방제에 대한 NPPO 권한과 참여

보충서 2: “잠재적인 경제적 중요성”과 환경적 고려를 위한 참고를 포함한 관련 용어의 이해에 대한 지침

1. 목적과 범위
2. 배경
3. IPPC와 ISPMs의 경제적 용어와 환경적 범위
4. PRA에서 경제적 고려 사항
 - 4.1 경제적 영향 종류
 - 4.2 비용 및 이익
5. 적용

보충서 2에 대한 부록

부록 1: 식물위생 용어집과 관련된 생물다양성 협약의 용어

1. 서론
2. 제시(presentation)
3. 용어
 - 3.1 “외래종 (Alien species)”
 - 3.2 “유입 (Introduction)”
 - 3.3 “침입외래종 (Invasive alien species)”
 - 3.4 “정착 (Establishment)”
 - 3.5 “의도적 유입(도입) (Intentional introduction)”
 - 3.6 “비의도적 유입 (Unintentional introduction)”
 - 3.7 “위험분석 (Risk analysis)”
4. 기타 개념
5. 참고자료

채택

이 기준은 최초로 1996년 FAO의 식물위생조치 전문가위원회에 의해서 국제기준으로 출간될 것을 권고 받았고 1997년에 출간되었다. ISPM 5로서 용어집 최초 버전은 1999년 제2차 ICPM에서 채택되었다.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다. ISPM 5의 현재 판은 2023년 3월 17차 CPM에서 채택되었다.

보충서 1은 2001년 4월 제3차 ICPM에서 최초 채택되었다. 보충서 1의 처음 개정판은 2012년 3월 제7차 CPM에서 채택되었다. 보충서 2는 2003년 4월 제5차 ICPM에서 채택되었다. 부록 1은 2009년 3-4월 제4차 CPM에서 채택되었다.

서론

범위

이 참고 기준은 세계적인 식물위생 시스템을 위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와 정의를 담고 있다. 이 기준은 국제식물보호협약(IPPC)과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s)의 이행과 관련하여 조화로운 국제적으로 합의된 어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되어 왔다.

조류(algae), 진균과 식물에 대한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에 따라서, 식물 관련 모든 참고 자료들은 조류와 진균이 IPPC과 ISPMs 맥락 내에 계속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목적

이 참고 기준 목적은 공적인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식물위생 법규와 규정에서의 공적인 식물위생 목적을 위하여 체약국들의 용어와 정의에 대한 사용과 이해에 대한 명확성과 일관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참고문헌

아래의 참고문헌들은 정의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용어와 정의의 승인에 해당된다. ISPMs에서는 가장 최신 버전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https://www.ippc.int/core-activities/standards-setting/ispms> IPP에 게시됨).

- CBD. 2000.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한 생물안전성 카르타헤나(Cartagena) 약정*.
몬트리얼, CBD
- CEPM. 1996. *제3차 식물위생조치에 대한 FA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1996.*
5월 13-17, 로마, IPPC 사무국, FAO
- . 1997. *제4차 식물위생조치에 대한 FA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1997.*
10월 6-10, 로마, IPPC 사무국, FAO
- . 1999. *제6차 식물위생조치에 대한 FA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1999.* 5월.
17-21, 로마, IPPC 사무국, FAO
- CPM. 2007. *제2차 CPM 보고서, 2007.* 3월 26-30, 로마, IPPC 사무국, FAO.
- . 2008. *제3차 CPM 보고서, 2008.* 4월 7-11, 로마, IPPC 사무국, FAO.
- . 2009. *제4차 CPM 보고서, 2009.* 3월 30-4월 3, 로마, IPPC 사무국, FAO.
- . 2012. *제7차 CPM 보고서, 2012.* 3월 19-23, 로마, IPPC 사무국, FAO.
- . 2013. *제8차 CPM 보고서, 2013* 4월 8-12, 로마, IPPC 사무국, FAO.
- . 2015. *제10차 CPM 보고서, 2016.* 3월 16-20, 로마, IPPC 사무국, FAO.
- . 2016. *제11차 CPM 보고서, 2016.* 3월 4-8, 로마, IPPC 사무국, FAO.
- . 2018. *제13차 CPM 보고서, 2018.* 4월 16-20, 로마, IPPC 사무국, FAO.
- . 2019. *제14차 CPM 보고서, 2019.* 4월 1-5, 로마, IPPC 사무국, FAO.
- . 2021. *제15차 CPM 보고서, 2021.* 3월 16, 18, 4월 1, 로마, IPPC
사무국, FAO.
- . 2022. *제16차 CPM 보고서, 2022.* 4월 5, 7, 21, 로마, IPPC 사무국,
FAO.
- . 2023. *제17차 CPM 보고서, 2023.* 3월 27-31, 로마, IPPC 사무국,
FAO.
- FAO. 1990. FAO 식물위생용어집. *FAO Plant Protection Bulletin*,
38(1):5-23. (현재 ISPM 5와 동일)
- FAO. 1995. *ISPM 5*, 1995 참조
- ICPM. 1998. *ICPM 보고서, 로마, 1998.* 11월 3-6, 로마, IPPC, FAO.
- . 2001. *제3차 ICPM 보고서, 로마, 2001.* 4월 2-6, 로마, IPPC,
FAO.
- . 2002. *제4차 ICPM 보고서, 로마, 2002.* 3월 11-15, 로마, IPPC,
FAO.

- . 2003. 제5차 ICPM 보고서, 로마, 2003. 4월 7~11. 로마, IPPC, FAO.
- . 2005. 제7차 ICPM 보고서, 로마, 2005. 4월 4~7. 로마, IPPC, FAO.
- IPPC. 1997. 국제식물보호협약. 로마, IPPC. FAO.
- ISO/IEC. 1991. ISO/IEC Guide 2:1991, 표준화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일반적 용어와 정의. 제네바, IOS, IEC.
- ISPM 2. 2007. 병해충위험분석 개요. 로마, IPPC, FAO.
- ISPM 3. 1995. 외래 생물방제제 수입 및 방사에 대한 행위규범. 로마, IPPC, FAO. [1996년 출간]
- ISPM 3. 2005. 생물방제제 및 기타 유용 생물체의 수출, 선적, 수입 및 방사 지침. 로마, IPPC, FAO.
- ISPM 5. 1995. 식물위생 용어집. 로마, IPPC, FAO. [1996년 출간]
- ISPM 8. 1998. 특정 지역에서의 병해충 상황 결정. 로마, IPPC, FAO.
- ISPM 10. 1999.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와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 설정 요건. 로마, IPPC, FAO.
- ISPM 11. 2001. 검역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험분석. 로마, IPPC, FAO.
- ISPM 11. 2004. 환경 위험과 살아있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검역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험분석. 로마, IPPC, FAO.
- ISPM 14. 2002. 병해충위험 관리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systems approach)에서 종합적 조치들의 사용. 로마, IPPC, FAO.
- ISPM 15. 2002. 국제 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 로마, IPPC, FAO.
- ISPM 16. 2002. 규제비검역병해충: 개념 및 적용. 로마, IPPC, FAO.
- ISPM 17. 2002. 병해충 보고. 로마, IPPC, FAO.
- ISPM 18. 2003. 식물위생조치로서 방사선조사의 사용 지침. 로마, IPPC, FAO.
- ISPM 20. 2004. 식물위생 수입규제 시스템 지침. 로마, IPPC, FAO.
- ISPM 21. 2004.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험분석. 로마, IPPC, FAO.
- ISPM 22. 2005. 병해충저발생 지역 설정을 위한 요건. 로마, IPPC, FAO.
- ISPM 23. 2005. 검사 지침. 로마, IPPC, FAO.
- ISPM 24. 2005. 식물위생조치의 동등성 결정과 인정을 위한 지침. 로마, IPPC, FAO.
- ISPM 25. 2006. 경유 화물. 로마, IPPC, FAO.

ISPM 27. 2006. 규제병해충의 진단 프로토콜. 로마 IPPC, FAO.

ISPM 28. 2007. 규제병해충에 대한 식물위생 소독처리. 로마, IPPC, FAO

WTO. 1994.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제네바, WTO

참고문헌의 개요

이 기준의 목적은 국가식물보호기관(NPPOs)과 다른 기구들의 정보교환, 공적 의사소통에서 사용되는 어휘와 식물위생조치와 관련되는 법령의 조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 버전의 용어집은 IPPC(1997) 승인의 결과로서 합의된 개정 내용과 ISPMs이 채택이 추가됨에 따라 늘어난 용어를 포함하였다.

동 용어집은 제18차 식물위생조치위원회(CPM, 2024) 총회까지 승인된 모든 용어와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네모 괄호([])에 있는 참고문헌은 용어와 정의가 승인된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번역이 수정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이전 판의 용어집과 마찬가지로, 정의에 사용된 용어는 다른 용어집 용어에 관련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리고 용어집의 다른 부분에 설명된 요소와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진하게 인쇄하였다. 또한 용어집에서 보이는 파생된 형태의 단어(예; inspection에서 파생된 inspected)도 용어집 용어로 고려한다.

식물위생 용어 및 정의

* 표시는 해당 용어가 출간 당시 용어기술위원회 작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용어 또는 정의가 향후 수정 또는 삭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흡수선량 (absorbed dose)

특정 대상의 질량 단위당 흡수된 방사선 에너지의 양
[ISPM 18, 2003, CPM 2012에서 개정]

부기 (additional declaration)

수입국이 식물위생증명서에 기재하기를 요구하고, 규제병해충 또는 규제 물품과 관련하여 어떤 화물에 관한 구체적인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문구
[FAO, 1990; ICPM, 2005; CPM 2016에서 개정]

지역 (area)

공식적으로 정의된 국가, 국가의 일부 또는 여러 국가의 전부 또는 일부
[FAO, 1990; ISPM 2, 1995; CEPMP, 1999에서 개정; WTO/SPS 협정에 근거(WTO, 1994)]

위험지역 (area endangered) : “endangered area” 참조

병해충저발생 지역 (area of low pest prevalence)

특정 병해충이 낮은 수준으로 존재하고(present), 효과적인 예찰 또는 방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자격이 있는 기관에 의해 확인된, 한 국가의 전부나 일부 또는 여러 국가의 전부 또는 일부인 하나의 지역 [IPPC, 1997, CPM, 2015에서 개정]

수피 (bark)

목재의 수간, 가지 또는 뿌리의 형성층 밖의 층 [CPM, 2008]

수피가 없는 목재 (bark-free wood)

용이 주변에 파고든 수피 및 나이트 사이의 수피낭을 제외한 모든 수피가

제거된 목재 [ISPM 15, 2002; CPM, 2008에서 개정]

생물방제제 (biological control agent)

병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천적, 길항체, 경쟁자 및 여타의 생물체

[ISPM 3, 1995; 개정된 ISPM 3, 2005]

완충지대 (buffer zone)

대상 병해충이 경계가 설정된 지역 안이나 밖으로 확산될 확률적 가능성 (probability)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식물위생상의 목적으로 공적인 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지역을 둘러싸거나 인접하여 있는 지역으로서, 적절한 경우, 식물위생 또는 다른 방제 조치 대상인 지역 [ISPM 10, 1999; ISPM 22, 2005; CPM, 2007에서 개정]

화학물 가압 침투 (chemical pressure impregnation)

공적인 기술적 설명에 따라 가압 절차를 통해 목재에 화학물 방부제를 처리 [ISPM 15, 2002; ICPM, 2005에서 개정]

위원회 (commission)

IPPC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식물위생조치 위원회(CPM) [IPPC, 1997]

품목 (commodity)

교역이나 기타 목적으로 이동되는 식물, 식물성 산물 또는 기타 물품의 종류 (type) [FAO, 1990; ICPM 2001에서 개정]

품목별 병해충 목록 (commodity pest list)

어떤 특정 품목과 관련될 수 있는 한 지역에 존재하는 (present) 병해충 목록 [CEPM, 1996, CPM, 2015에서 개정]

(어떤 화물에 대한) 준수 절차 (compliance procedure (for a consignment))

어떤 화물이 식물위생 수입요건 또는 경유와 관련된 식물위생 요건을 준수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확인, 화물 보전성 확인, 검사 또는 정밀 검사의 공적인 절차 [CEPM, 1999; CPM, 2009; CPM, 2023에서 개정]

화물 (consignment)

요구된다면, 하나의 식물위생증명서에 의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되는 일정 수량의 식물, 식물성 산물 또는 기타 물품(하나의 화물은 하나 또는 이상의 품목이나 더미(lots)로 구성될 수 있다) [FAO, 1990; ICPM, 2001에서 개정]

경유 화물 (consignment in transit)

수입되지 않은 상태로 어떤 국가를 통과하고, 식물위생조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화물 [FAO, 1990; CEPM, 1996; CEPM, 1999; ICPM, 2002 ICPM에서 개정, ISPM 25, 2006; 이전에는 경유국(country of transit)]

확산 억제 (containment)

어떤 병해충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 지역 내 및 주위에 식물위생조치를 적용 [FAO, 1995]

오염 병해충 (contaminating pest)

품목, 포장재(packaging), 운송수단 또는 컨테이너에 의해 운반되는, 또는 저장 장소에 존재하는 병해충으로, 식물 및 식물성 산물일 경우 그들을 감염시키지 않는 병해충 [CEPM, 1996; CEPM, 1999; CPM 2018에서 개정]

오염 (contamination)

품목, 포장재, 수송수단, 컨테이너 또는 저장장소에 오염 병해충이 존재하거나 또는 규제물품이 의도하지 않게 존재 [CEPM, 1997; ICPM, 1999; CPM, 2018에서 개정]

(병해충의) 방제 (control (of a pest))

특정 병해충 개체군의 억제(suppression), 확산 억제 및 박멸 [FAO, 1995]

(어떤 지역에서) 시정활동 계획 (corrective action plan) (in an area)

특정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허용수준을 초과하거나 또는 공적으로 설정된 절차 이행이 실패한 경우, 식물위생 목적으로 공적으로 경계가 설정된 지역에서 이행될 식물위생활동의 문서화된 계획 [CPM, 2009]

(식물성 산물 화물의) 원산지 국가

(country of origin (of a consignment of plant products))

식물성 산물이 만들어진 식물이 자란(grown) 국가 [FAO, 1990; CEP, 1996; CEP, 1999에서 개정]

(식물 화물의) 원산지 국가 (country of origin (of a consignment of plants))

해당 식물이 자란(grown) 국가 [FAO, 1990; CEP, 1996; CEP, 1999에서 개정]

(식물 및 식물성 산물 이외의 규제물품의) 원산지 국가

(country of origin (of regulated articles other than plants and plant products))

해당 규제물품이 병해충의 오염에 최초로 노출된 국가 [FAO, 1990; CEP, 1996; CEP, 1999에서 개정]

수피가 제거된 목재 (debarked wood)

수피를 제거하게 되는 어떠한 가공 절차를 거친 목재 (수피를 제거한 목재가 반드시 수피가 없는 목재인 것은 아님) [CPM, 2008: debarking을 대체]

경계설정 조사 (delimiting survey)

어떤 병해충에 의해 감염되거나 또는 무발생으로 고려되는 지역의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수행되는 조사(survey) [FAO, 1990]

검출 조사 (detection survey)

병해충이 존재 또는 부재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되는 조사 [FAO, 1990; FAO, 1995: CPM, 2022에서 개정]

유치 (detention)

하나의 식물위생조치로서, 화물을 공적 보관(custody) 또는 감금(confinement)해 놓음 [FAO, 1990; FAO, 1995; CEP 1999; ICPM, 2005에서 개정]

비활성화 (devitalization)

식물 또는 식물성 산물이 발아, 성장 또는 추가로 증식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절차 [ICPM, 2001]

선량 지도화 (dose mapping)

처리단위 부피(process load) 내의 특정 위치에 설치된 선량계 (dosimeters)를 사용하여, 처리단위 부피 내의 흡수선량 분포를 측정 [ISPM 18, 2003]

짐갈개 (dunnage)

품목을 보호 또는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품목에 결합된 상태로 남아 있지 않는 목재포장재 [FAO, 1990; 개정된 ISPM 15, 2002]

생태계 (ecosystem)

식물, 동물, 미생물 군집 그리고 이들의 비생물적 환경이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서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역동적 복합체 [ISPM 3, 1995; ICPM, 2005에서 개정]

(소독처리) 효력 (efficacy (treatment))

어떤 기술된 소독처리에 의하여 정의되고(defined) 측정 및 재현이 가능한 효과 [ISPM 18, 2003]

긴급활동 (emergency action)

기존의 식물위생조치에 의해서는 해결되지 못하는 새로운 또는 예기치 못한 식물위생 상황에서, 특정 병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진 즉각적인 공적 활동 [ICPM, 2001]

긴급조치 (emergency measure)

기존의 식물위생조치로 다루지 못하는, 새로운 또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병해충이 들어옴, 정착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즉각적인 공적 조치. 긴급조치는 잠정적 조치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ICPM, 2001; ICPM, 2005, CPM, 2023에서 개정]

위험지역 (endangered area)

그 지역에 존재할 경우 경제적으로 중요한 손실을 일으킬 병해충이 정착하기에 생태적 요인이 양호한 지역 [ISPM 2, 1995]

(화물의) 반입 (entry (of a consignment))

입항지를 통하여 특정 지역으로 이동 [FAO, 1995]

(병해충의) 들어옴 (entry (of a pest))

어떤 병해충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지만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공식적으로 방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 안으로 이동하는 것 [ISPM 2, 1995]

(식물위생조치의) 동등성 (equivalence of (phytosanitary measures))

특정 병해충위험에 대해, 각기 다른 식물위생조치가 체약국의 적정 보호수준을 달성하는 상황 [FAO, 1995; CEPF, 1999에서 개정; WTO/SPS 협정(1994)에 근거; ISPM 24, 2005]

박멸 (eradication)

어떤 지역에서 특정 병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식물위생조치를 적용 [FAO, 1990; FAO, 1995에서 개정; 이전의 “eradicate”]

(어떤 병해충의) 정착 (establishment)

어떤 병해충이 특정 지역 내에 들어온 후, 예견할 수 있는 미래에, 영구적이 됨(perpetuation) [FAO, 1990; ISPM 2, 1995; IPPC, 1997에서 개정 : 이전의 “established”]

(어떤 병해충의) 배제(exclusion)

어떤 병해충이 특정 지역으로 들어오거나 정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식물위생조치의 적용 [CPM, 2018]

포장 (field)

어떤 품목이 생육하는 생산장소 내에서 한정된 경계를 가지는 한 구역의 토지 [FAO, 1990]

무감염 (find free)

화물, 포장 또는 생산장소를 검사하고, 특정한 병해충이 없다고 고려하는 것 [FAO, 1990]

(화물, 포장, 생산장소에) 없는 (free from (of a consignment, field or place of production))

식물위생 절차의 적용에 의하여 검출될 수 있는 수 또는 양만큼의 병해충 (또는 특정 병해충)이 없는 [FAO, 1990; FAO, 1995; CEPF, 1999]

신선한 (fresh)

살아 있는; 건조, 급속 냉동 또는 보존처리 되지 않은 [FAO, 1990]

훈증 (fumigation)

해당 품목에 전적으로 또는 일차적으로 가스상태로 접촉하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소독처리 [FAO, 1990; FAO, 1995에서 개정]

일반 예찰 (general surveillance)

특정 지역의 병해충에 대한 정보가, 조사가 아닌 비공적 또는 공적 출처를 통하여 얻어지는, 공적 절차 [CPM, 2024]

곡물(품목으로서) (grain(as a commodity))

가공 또는 소비용 (식물학적 의미의) 종자, 그러나 재식용은 아님 [FAO, 1990; ICPM 2001; CPM 2016, CPM, 2021에서 개정]

재배매체 (growing medium)

그 안에서 식물 뿌리가 자라고 있거나, 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 [FAO, 1990]

생육 기간 (growing period)

한 식물 종이 어떤 지역, 생산장소 또는 생산포장에서 활발하게 생육하는 시기 [ICPM, 2003; CPM 2019에서 개정]

서식지 (habitat)

어떤 생물체가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또는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생태계의 일부 [ICPM, 2005; CPM, 2015에서 개정]

조화 (harmonization)

서로 다른 국가들이 공통된 기준에 근거하여 식물위생조치를 설정, 인정 및 적용 [FAO, 1995; CEPM, 1999에서 개정; WTO/SPS(1994)협정에 근거]

조화된 식물위생조치 (harmonized phytosanitary measures)

IPPC 체약국들이 국제기준 근거하여 설정한 식물위생조치 [IPPC, 1997]

열처리 (heat treatment)

공적인 기술 규격에 따라, 최소 시간 동안 최소 온도에 도달하도록 품목을 가열하는 절차 [ISPM 15, 2002; ICPM, 2005에서 개정]

기주 병해충 목록 (host pest list)

세계적으로 또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식물 종을 감염시키는 병해충의 목록 [CEPM, 1996; CEPM, 1999에서 개정]

기주범위 (host range)

자연 조건 하에서 특정한 병해충 또는 기타 생물체를 부양(sustaining)할 수 있는 종 [FAO, 1990; 개정된 ISPM 3 2005]

(화물의) 아이디 (identity (of a consignment))

해당 식물위생증명서에 담겨지고 “상품의 이름과 신고된 수량”, “식물의 학명”과 “원산지” 란에 기재된 화물의 요소(components) [CPM, 2023]

수입 허가서 (import permit)

정해진 식물위생 수입요건에 따라 어떤 품목의 수입을 허가해 주는 공식 문서 [FAO, 1990; FAO, 1995; ICPM, 2005]

불활성화 (inactivation)

미생물을 생장이 불가능하도록 처리 [ISPM 18, 2003]

침입 (incursion)

정착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아니나 가까운 장래에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지역에서 고립된(isolated) 병해충 개체군이 최근에 검출됨 (detection) [ICPM 2003]

(어떤 품목의) (병해충) 만연(감염) (infestation (of a commodity))

식물 또는 식물성 산물의 살아 있는 병해충이 어떤 품목에 존재. (병해충) 만연은 감염(infection)을 포함 [CEPM, 1997; CEPM, 1999에서 개정]

검사 (inspection)

병해충이 있는지, 또는 식물위생 요건과의 부합을 결정하기 위해 식물, 식물성 산물 또는 다른 규제물품에 대한 공적인 육안 조사(examination) [FAO, 1990; FAO, 1995; CPM, 2024에서 개정; 이전의 “inspect”]

검역관 (inspector)

국가식물보호기관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자격을 부여한 (authorized) 사람 [FAO, 1990]

(화물의) 보전성 (integrity (of a consignment))

해당 아이디어가 바뀌지 않고 포장재가 손상되지 않고 함부로 변경된 표시가 나지 않는 경우, 식물위생증명서나 기타 공식적으로 수용 가능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화물의 상태 [CPM, 2007; CPM, 2023에서 개정]

용도 (intended use)

식물, 식물성 산물 또는 다른 물품이 수입, 생산 또는 사용되는 신고된 목적 [ISPM 16, 2002; CPM, 2009에서 개정]

(화물의) 차단 (interception (of a consignment))

식물위생 규정 준수 실패로 인하여 수입되는 화물의 거부 또는 반입 통제 [FAO, 1990; FAO, 1995에서 개정]

(어떤 병해충의) 발견 (interception (of a pest))

수입된 화물의 검사(inspection) 또는 정밀검사(testing) 중 어떤 병해충의 검출 [FAO, 1990; CEPM, 1996]

중간 검역 (intermediate quarantine)

원산지나 도착지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검역을 하는 것 [CEPM, 1996]

국제식물보호협약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1951년 로마에서 FAO에 기탁되었고, 그 후 개정된 국제식물보호협약 [FAO, 1990]

식물위생조치 국제기준 (International Standard for Phytosanitary Measures)

FAO 총회, IPPC 하에 설립된 잠정식물위생조치위원회나 식물위생조치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국제기준 [CEPM, 1996; CEPM, 1999에서 개정]

국제기준 (international standards)

IPPC 제10조 1, 2항에 따라 설정된 국제 기준 [IPPC, 1997]

(어떤 병해충의) 유입 (introduction)

정착을 일으키는 어떤 병해충이 들어옴 [FAO, 1990; ISPM 2, 1995; IPPC, 1997에서 개정]

대규모 방사 (inundative release)

신속한 효과를 이루기를 기대하며 대량 생산된 생물방제제 또는 유용생물을 대량 방사 [ISPM 3, 1995; 개정된 ISPM 3, 2005]

국제식물보호협약 (IPPC)

국제식물보호협약, 1951년 로마에서 FAO에 기탁되었고, 그 후 개정된 국제식물보호협약 [FAO, 1990; ICPM, 2001에서 개정됨]

방사선 조사 (irradiation)

이온화 방사선의 어떤 형태를 사용하는 소독처리(treatment) [ISPM 18, 2003]

ISPM

식물위생조치 국제기준 [CEPM, 1996; ICPM, 2001에서 개정]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

현대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획득된 유전물질의 새로운(novel) 조합을 가진 살아있는 생물체 모두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한 생물안전성 카르타헤나 (Cartagena) 약정(CBD, 2000)]

LMO living modified organism [ISPM 11, 2004]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더미 (lot)

단일 품목의 단위 개수이며, 구성, 원산지 등의 동질성으로 구별 가능하며, 화물의 일부를 구성함 [FAO, 1990]

최소 흡수 선량 (minimum absorbed dose: D_{min})

처리 부피 내에서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최소 흡수선량 [ISPM 18, 2003]

현대 생명공학 (modern biotechnology)

자연적인 생리적 생식 또는 재조합(recombination) 장벽을 극복하면서 전통적인 육종이나 선발에 이용된 기술이 아닌 다음을 적용하는 것:

- a. DNA 재조합과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소기관에 직접 주입하는 것을 포함한 시험관 내 핵산 기술
- b. 분류학상 과(family)를 뛰어넘는 세포의 융합

[CBD에 대한 생물안전 카르타헤나(Cartagena) 약정, 2000. CBD]

모니터링 (monitoring)

식물위생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적 절차 [CEPM, 1996]

모니터링 조사 (monitoring survey)

어떤 병해충 집단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조사 [ISPM 4, 1995]

국가식물보호기관 (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IPPC에 의해 명시된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정부에 의해 설립된 공적 기관 [FAO, 1990; 이전의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national)”]

천적 (natural enemy)

원산 지역에서 다른 생물체를 희생시켜 생활하며, 그 생물체 개체군을 제한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생물체. 여기에는 기생충, 기생자, 포식자 및 식식성 생물체와 병원체가 포함됨 [ISPM 3, 1995; 개정된 ISPM 3, 2005]

비검역병해충 (non-quarantine pest)

어떤 지역에서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FAO, 1995]

NPPO 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국가식물보호기관 [FAO, 1990; ICPM, 2001]

공적 (official)

국가식물보호기관에 의해 설정, 허가 또는 수행되는 [FAO, 1990]

공적 방제 (official control)

검역병해충의 박멸(eradication)이나 확산억제(containment), 또는 규제 비검역병해충의 관리(management)를 목적으로 한 의무적인(mandatory) 식물위생 규정의 적극적인(active) 시행 및 의무적인(mandatory) 식물위생 절차의 적용 [ICPM, 2001]

발생 (outbreak)

어떤 지역에서, 침입(incursion)을 포함한, 병해충 집단의 검출 또는 정착한 병해충의 갑작스런 유의한 증가 [FAO, 1995; ICPM, 2003에서 개정]

포장재 (packaging)

품목을 지지, 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된 물질[ISPM 20, 2004]

기생자 (parasite)

자기보다 큰 생물체 외부나 내부에 살면서 그것으로 양육되는 생물체 [ISPM 3, 1995]

기생충 (parasitoid)

미성숙 단계일 때만 기생하고, 발달 과정에서 기주를 죽이고, 성충일 때는 자유 생활하는 곤충 [ISPM 3, 1995]

병원체 (pathogen)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ISPM 3, 1995]

경로 (pathway)

어떤 병해충의 들어옴 또는 확산을 일으키는 수단 [FAO, 1990; FAO, 1995에서 개정]

병해충 (pest)

식물이나 식물성 산물에 해로운 식물, 동물 또는 병을 일으키는 원인체 (agent)의 종, 계통(strain) 또는 생태형(biotype). 주의: IPPC에서는 ‘식물 병해충’이 때로는 ‘병해충’ 용어로 사용된다. [FAO, 1990; ISPM 2, 1995; IPPC, 1997; CPM, 2012에서 개정]

병해충 분류 (pest categorization)

어떤 병해충이 검역병해충이나 규제비검역병해충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ISPM 11, 2001]

병해충 진단 (pest diagnosis)

어떤 병해충의 검출(detection)과 분류동정 과정 [ISPM 27, 2006]

병해충무발생 지역 (pest free area)

특정 병해충이 없는(absent) 것이 과학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고, 적절할 경우, 이러한 상황이 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지역 [ISPM 2, 1995; CPM, 2015에서 개정]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 (pest free place of production)

특정 병해충이 없는(absent) 것이 과학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고, 적절할 경우, 이러한 상황이 일정 기간 동안 공적으로 유지되는 생산장소 [ISPM 10,

1999; CPM, 2015에서 개정]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 (pest free production site)

특정 병해충이 없는(absent) 것이 과학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고, 적절할 경우, 이러한 상황이 일정 기간 동안 **공적으로** 유지되는 **생산포장 (production site)** [ISPM 10, 1999; CPM, 2015에서 개정]

병해충 기록 (pest record)

설명된 상황에서 어떤 지역 (주로 한 국가) 내의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 특정 병해충이 있거나 또는 없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 [CEPM, 1997]

(검역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험 (pest risk (for quarantine pests))

어떤 병해충의 유입과 확산의 확률적 가능성(probability)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잠재적인 경제적 중요성의 정도 [ISPM 2, 2007]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험 (Pest risk (for regulated non-quarantine pests))

재식용 식물에 있어 어떤 병해충이 그 식물의 용도에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확률적 가능성(probability) [ISPM 2, 2007]

병해충위험분석(합의된 설명) (pest risk analysis(agreed interpretation))

어떤 생물체가 병해충인지, 규제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식물위생 조치의 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또는 다른 과학적, 경제적 증거를 평가하는 절차 [ISPM 2, 1995; IPPC, 1997에서 개정; ISPM 2, 2007]

(검역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험평가 (pest risk assessment (for quarantine pest))

어떤 병해충의 유입과 확산의 확률적 가능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잠재적인 경제적 중요성 정도에 대한 평가 [ISPM 2, 1995; 개정된 ISPM 11, 2001; ISPM 2, 2007]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험평가 (pest risk assessment (for

regulated non-quarantine pests))

재식용 식물에 있어 어떤 병해충이 그 식물의 용도에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평가 [ICPM, 2005]

(검역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험관리 (pest risk management (for quarantine pests))

어떤 병해충의 유입과 확산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평가와 선택 [ISPM 2, 1995; 개정된 ISPM 11, 2001]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험 관리 (pest risk management (for regulated non-quarantine pests))

재식용 식물에 있어 어떤 병해충이 그 식물의 용도에 경제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영향을 주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평가 및 선택 [ICPM, 2005]

(어떤 지역에서의) 병해충 상황(pest status (in an area))

현재 및 역사적 병해충 기록 및 여타 정보에 근거하여, 전문가의 판단을 이용하여 공적으로 결정된, 적절한 경우 그 분포를 포함한 어떤 지역에서의 현재의 어떤 병해충의 존재 또는 부재 [CEPM, 1997; ICPM, 1998에서 개정]

PFA 병해충무발생 지역 [ISPM 2, 1995; ICPM, 2001에서 개정]

식물위생 활동 (phytosanitary action)

식물위생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식물위생증명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수행된 검사, 정밀검사(testing), 예찰(surveillance) 또는 소독처리와 같은 공적 활동(operation) [ICPM, 2001; ICPM, 2005; CPM, 2024에서 개정]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어떤 화물이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IPPC의 증명서 양식에 부합하는 공적 종이 문서 또는 이의 공적으로 전자적 동등한 것(equivalent) [FAO, 1990; CPM, 2012에서 개정]

식물위생증명 (phytosanitary certification)

식물위생증명서를 발행하게 하는 식물위생 절차의 사용 [FAO, 1990]

식물위생 수입요건 (phytosanitary import requirements)

수입국 내로 이동하는 화물과 관련한, 수입국이 설정한 특정한 식물위생조치 [ICPM, 2005]

식물위생 법령 (phytosanitary legislation)

국가식물보호기관에 식물위생 규정을 작성할 수도 있는 법적 권위를 부여하는 기본 법(laws) [FAO, 1990; FAO, 1995에서 개정]

식물위생조치(합의된 설명) (phytosanitary measure) (agreed interpretation)

검역병해충의 유입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또는 규제비검역병해충의 경제적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령, 규정, 또는 공적인 절차 [ISPM 4, 1995; IPPC, 1997; ICPM, 2002에서 개정]

식물위생조치 용어에 대한 합의된 설명은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한 식물위생 조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 관계는 IPPC(1997) 제2조에 있는 정의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

식물위생 절차 (phytosanitary procedure)

식물위생 활동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공적인 방법 [FAO, 1990; FAO, 1995; CEPMP, 1999; ICPM 2001; ICPM, 2005; CPM, 2024에서 개정]

식물위생 규정 (phytosanitary regulation)

식물위생증명을 위한 절차 설정을 포함한, 검역병해충의 유입 또는 확산을 방지하거나 규제비검역병해충의 경제적 피해를 제한하기 위한 공적인 규정 (rule) [FAO, 1990; 개정 ISPM 4, 1995; CEPMP, 1999; ICPM 2001]

(화물의) 식물위생 안전성 (phytosanitary security (of a consignment))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을 통하여, 보전성(integrity)이 유지되어 왔고, 규제병해충에 의한 감염과 오염이 방지된 화물의 상태 [CPM, 2009; CPM, 2023에서 개정]

생산장소 (place of production)

단일 생산 또는 농장 단위로 운영되는 장소(premises) 또는 포장의 집합 [FAO, 1990; CEPM, 1999; CPM, 2015에서 개정]

식물성 산물 (plant products)

식물(곡류 포함) 유래 미제조(unmanufactured)된 물질과 원래 또는 가공의 특성상 병해충 유입 및 확산의 위험성을 일으킬 수도 있는 제조물(manufactured products) [FAO, 1990; IPPC, 1997에서 개정 ; 이전의 “plant product”]

식물보호기관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national))

“국가식물보호기관(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참조

식물검역 (plant quarantine)

검역병해충의 유입 또는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또는 공적 방제를 보증하기 위해 설계된 모든 활동 [FAO, 1990; FAO, 1995에서 개정]

(이식을 포함한) 재식(planting (including replanting))

식물의 이후의(subsequent) 성장, 생식(reproduction) 또는 번식(propagation)을 위하여 재배매체에 식물을 심거나, 접붙이기 또는 그와 유사한 작업 등을 수행[FAO, 1990; CEPM, 1999에서 개정]

식물 (plants)

종자 및 생식질(germplasm)을 포함한, 살아있는 식물 및 그 일부 [FAO, 1990; IPPC, 1997에서 개정]

재식용 식물 (plants for planting)

식재된 채로 유지되거나, 식재 또는 이식(replanting)될 용도의 식물 [FAO, 1990]

반입항 (point of entry)

화물의 수입 또는 사람의 입국을 위해 공적으로 지정된 공항, 항구, 육지 국경 지점 또는 다른 장소 [FAO, 1995; CPM, 2015에서 개정]

반입 후 검역 (post-entry quarantine)

화물이 반입(entry)된 후 실시되는 검역 [FAO, 1995]

병해충위험분석(PRA)

병해충위험분석(Pest risk analysis) [ISPM 2, 1995; ICPM, 2001에서 개정]

PRA 지역 (PRA area)

PRA가 수행되는 것과 관련된 지역 [ISPM 2, 1995]

실질적으로 없는 (practically free) (화물, 포장 또는 생산장소에서)

품목의 생산 및 유통에 적용된 모범 재배 및 취급 관행의 결과 그리고 일관성 (consistent) 있게, 예상되는 수 또는 양을 초과하는 병해충(또는 어떤 특정 병해충)이 없음 [FAO, 1990; FAO, 1995에서 개정]

포식자(predator)

생육기 중 다른 동물 생물체들을 포식하거나 섭식하면서, 이들 중 하나 이상은 죽이는 천적 [ISPM 3, 1995]

처리 부피 (process load)

특정 적재 배열(loading configuration)을 가지고, 단위물(single entity)로 소독처리되는 물질의 부피 [ISPM 18, 2003]

가공된 목재물질 (processed wood material)

풀, 열과 압력 또는 이들의 조합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목재로 구성된 산물 [ISPM 15, 2002]

생산포장 (production site)

식물위생 목적을 위한 별도의 단위로 관리되는 생산장소(place of production)의 정해진 부분 [CPM, 2015]

금지 (prohibition)

특정한 병해충 또는 품목의 수입 또는 이동을 금지하는 식물위생 규정

[FAO, 1990; FAO, 1995에서 개정]

잠정조치 (provisional measure)

현재 적절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완전한 충분한(full) 기술적 정당성 없이, 어떤 병해충의 들어옴, 정착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임시적 공식 조치이며, 가능한 빨리 검토와 충분한 기술적 정당성 대상임[ICPM, 2001; CPM, 2023에서 개정]

검역 (quarantine)

검사, 정밀검사, 소독처리, 관찰 또는 연구를 위하여 규제물품, 병해충 또는 유용생물에 대한 공적인 제한(confinement) [FAO, 1990; 개정 ISPM 3, 1995; CEPMP, 1999; CPM, 2018에서 개정]

검역지역 (quarantine area)

검역병해충이 존재하고 공적으로 방제되고 있는 지역 [FAO, 1990; FAO, 1995에서 개정]

검역병해충 (quarantine pest)

위험지역에 잠재적인 경제적 중요성이 있으며, 그 곳에 아직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지만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지 않으며 공적으로 방제되고 있는 병해충 [FAO, 1990; FAO, 1995; IPPC, 1997에서 개정]

검역 시설 (quarantine station)

검역 중인 식물 또는 식물성 산물 또는 유용생물을 포함하는 다른 규제 물품을 보관하는(holding) 공적인 장소(station) [FAO, 1990; FAO 1995에서 개정됨, 이전의 “검역 장소 또는 시설”; CPM, 2015]

생목재 (raw wood)

가공 또는 소독처리를 거치지 않은 목재 [ISPM 15, 2002]

재수출된 화물 (re-exported consignment)

어떤 국가로 수입된 후, 그 곳에서 수출되는 화물. 해당 화물은 저장, 분할, 다른 화물과 혼합 또는 포장재가 교체될 수도 있음 [FAO, 1990; CEPMP,

1996; CEPM, 1999; ICPM, 2001; ICPM 2002에서 개정, 이전의 “country of re-export”]

대조 표본 (reference specimen)

동정, 확인 또는 비교를 목적으로 한, 보존되고 접근 가능한, 특정 생물체의 집단에서 유래된 표본 [ISPM 3, 2005; CPM, 2009에서 개정됨]

거부 (refusal)

식물위생 규정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화물** 또는 여타 규제물품의 반입을 금지 [FAO, 1990; FAO, 1995에서 개정]

지역식물보호기구 (Reg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IPPC 제IX조에 의해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간(intergovernment) 기구 [FAO, 1990; FAO, 1995; CEPM, 1999에서 개정; 이전의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regional)]

지역기준 (regional standards)

지역식물보호기구가 해당 기구의 회원국들을 안내(guidance)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기준 [IPPC, 1997]

규제지역 (regulated area)

해당 지역 안으로, 지역 내 또는 지역으로부터 식물, 식물성 산물 및 여타 규제물품이 식물위생조치 대상인 지역 [CEPM, 1996; CEPM, 1999; ICPM, 2001에서 개정]

규제물품 (regulated article)

특히, 국제 수송과 관여 되어 있는 경우, 식물위생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병해충**이 부착(harbours) 또는 확산될 수 있는 식물, 식물성 산물, 저장 장소, **포장재**, 수송 수단, 컨테이너, 흙 및 여타의 생물체, 물품 또는 물질[FAO, 1990; FAO, 1995; IPPC, 1997에서 개정]

규제비검역병해충 (regulated non-quarantine pest)

재식용 식물에 존재할 경우, 해당 식물의 **용도**에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영향을 끼쳐 수입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규제되는 **비검역병해충** [IPPC,

1997]

규제병해충 (regulated pest) 검역병해충 또는 규제비검역병해충 [IPPC, 1997]

(환경으로) 방사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어떤 생물체를 환경에 의도적으로 풀어놓는 것 [ISPM 3, 1996]

(화물의) 합격 (release (of a consignment))

준수 절차를 완료한 후 화물이 반입되도록 허가 [FAO, 1995; CPM, 2024에서 개정]

이식 (replanting) “planting” 참조

요구 반응 (required response)

어떤 소독처리 효과의 정해진 수준 [ISPM 18, 2003]

RNQP 규제비검역병해충 [ISPM 16, 2002]

원목 (round wood)

수피가 있거나 없을 수 있고, 자연적인 둥근 표면을 가지고 있으며, 길이로 제재되지 않은 목재 [FAO, 1990]

RPPO 지역식물보호기구 [FAO, 1990; ICPM, 2001에서 개정]

제재목 (sawn wood)

수피와 자연적인 둥근 표면의 여부와 관계없이 길이로 제재된 목재 [FAO, 1990]

사무국장 (Secretary)

제XII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사무국장 [IPPC, 1997]

종자 (seeds) (품목(commodity)로서의)

재식용 (식물학적 개념에서의) 종자 [FAO, 1990; ICPM 2001; CPM

2016; CPM 2021에서 개정]

불임충 기술 (SIT) sterile insect technique [ISPM 3, 2005]

특정 예찰 (specific surveillance)

특정 지역에서 병해충에 대한 정보가 조사를 통하여 얻어지는 공식 절차 [CPM, 2024]

(어떤 병해충의) 확산 (spread (of a pest))

어떤 지역 내에서 어떤 병해충의 지리적 분포의 확장 [ISPM 2, 1995]

기준 (standard)

합의에 의해 제정되고 인정된 기구에 의해 승인을 받은 문서를 말하며, 공통의 그리고 반복되는 사용과 규칙, 지침, 또는 활동 또는 그 결과의 특징을 제공하여, 주어진 문구에서 최적의 규칙의 정도의 성취를 목적으로 함 [FAO, 1995; ISO/IEC Guide 2:1991 정의]

불임충 (sterile insect) 특정 처리 결과로서 생식할 수 없는 곤충 [ISPM 3, 2005]

불임충 기술 (sterile insect technique)

포장에 있는 동일 종의 개체군 생식을 감소시키기 위해 광범위하게 불임충을 대규모 방사하는 병해충 방제법 [ISPM 3, 2005]

저장 산물 (stored product)

건조 형태로 저장되는, 식용 또는 가공용의 미제조된(unmanufactured) 식물성 산물(여기에는 특히 곡류, 건조 과일 및 채소류가 포함됨) [FAO, 1990]

억제 (suppression)

병해충 개체군을 줄이기 위해 감염 지역에서 식물위생조치를 적용 [FAO, 1995; CEPM, 1999에서 개정]

예찰 (surveillance)

특정 지역에서 병해충에 대한 정보가 일반 예찰, 특정 예찰 또는 이 둘의 조합을 통하여 얻어지는 공식 절차 [CEPM, 1996; CPM 2015; CPM 2024]

에서 개정]

(병해충) 조사 (survey) (of pests)

어떤 지역, 생산장소 또는 생산포장에서 병해충의 존재 또는 부재 또는 어떤 병해충 집단의 경계 또는 특징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실시되는 공식 절차 [FAO, 1990; CEPF, 1996; CPM, 2015; CPM, 2019에서 개정]

시스템적 접근 (systems approach)

효과가 누적되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최소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관리 방안을 종합한 병해충위험관리 방안(option) [ISPM 14, 2002; ICPM, 2005; CPM, 2015에서 개정]

기술적으로 정당한 (technically justified)

적절한 병해충위험분석이나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이용 가능한 과학적 정보의 다른 비교 검토 (examination) 및 평가를 이용하여 도달한 결론에 근거하여 정당한 [IPPC, 1997]

정밀검사 (test)

예를 들면, 화학적, 분자적 또는 혈청적 특성을 사용하여, 병해충의 존재 여부 결정, 병해충 분류동정 또는 특정 식물위생 요건의 부합을 확인하기 위한, 식물, 식물성 산물 또는 다른 규제물품에 대한, 검사가 아닌 공적 조사 (examination) [FAO, 1990; CPM, 2018; CPM, 2024에서 개정]

(특정 병해충의) 허용수준 (tolerance level (of a pest))

특정 병해충의 방제 또는 확산 또는 유입을 방지할 위한 활동을 위하여 한계수준(threshold)으로 특정된 병해충의 발생 정도 (incidence) [CPM, 2009]

일시적 (transience)

정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병해충의 존재 [ISPM 8, 1998]

경유 (transit) consignment in transit 참조

투명성 (transparency)

식물위생조치 및 그 합리성(rationale)을, 국제적인 수준에서 이용 가능하게 하는 원칙 [FAO, 1995; CEPF, 1999에서 개정; WTO/SPS 협정에 근거 (WTO, 1994)]

소독처리 (식물위생조치로서) (treatment (as a phytosanitary measure))
규제병해충을 사멸, 불활성화(inactivating), 제거 또는 불임화 또는 비활성화 (devitalizing) 하기 위한 공적 절차 [FAO, 1990; FAO, 1995; ISPM 15, 2002; ISPM 18, 2003; ICPM, 2005; CPM, 2021에서 개정]

소독처리 스케줄(treatment schedule)

정해진 효과(efficacy)에서 의도된 결과(즉, 병해충의 사멸, 불활성화 (inactivation) 또는 제거 또는 병해충을 불임화 또는 비활성화 (devitalization))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독처리의 중요한 변수들 [ISPM 28, 2007]

육안 조사 (visual examination)*

육안, 렌즈, 광학 또는 해부현미경을 사용하여 조사(examination) [ISPM 23, 2005; CPM, 2018에서 개정]

목재 (wood) (품목로서의)

목재포장재, 가공된 목재물과 대나무와 라탄 산물을 제외한, 수피가 있거나, 또는 없는 상태의 원목, 제재목, 우드칩과 목재 잔재물 (wood residue) 같은 품목 [FAO, 1990; ICPM 2001; CPM 2016: CPM 2021에서 개정]

목재포장재 (wood packaging material)

품목을 지지, 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 산물(종이 제품은 제외) (짐갈개 포함) [ISPM 15, 2002]

이 보충서는 2001년 4월 3차 ICPM에서 최초 채택되었다.
이 보충서의 1차 개정은 2012년 3월 제7차 CPM에서 채택되었다.

이 보충서는 이 기준의 규정적인 부분이다.

보충서 1: “공적 방제”와 “널리 분포하지 않는” 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지침

서론

범위

이 보충서는 다음의 지침을 제공한다:

- 규제병해충의 공적 방제 그리고
- 어떤 병해충이 존재하지만 널리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고려되는 경우, 이 병해충이 검역병해충으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

참고문헌

이 기준은 ISPMs를 참고한다. ISPMs는 IPP(www.IPPC.int)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의

공적 방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검역병해충의 박멸(eradication)이나 확산억제(containment), 또는 규제비 검역병해충의 관리(management)를 목적으로 한 의무적인 식물위생 규정의 적극적인(active) 시행 및 의무적인 식물위생 절차의 적용

배경

“존재하지만 널리 분포하지 않으며 공적으로 방제되는”이란 말은 검역병해충의 정의의 중요한 개념을 표현한다. 그 정의에 따르면, 검역병해충은 위험지역에 대하여 잠재적 경제적 중요성이 항상 있어야만 한다. 또한, 해당 지역에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널리 분포하지 않으면서 공적 방제 대상이어야 하는 범주를 충족하여야만 한다.

식물위생 용어집은 공적을 “국가식물보호기관(NPPO)에 의해 설정, 승인 또는 수행되는”으로, 방제를 “특정 병해충 개체군의 억제, 확산 억제 또는 박멸”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식물위생 목적으로 공적 방제의 개념은 이들 두 가지 정의의 조합으로 적절하게 표현되지 않는다.

이 보충서의 목적은 다음의 해석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있다:

- 어떤 지역에 존재하는 검역병해충뿐만 아니라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한 공적 방제의 개념과 실질적 적용
- 검역병해충의 “존재하나 널리 분포하지 않으면서 공적 방제 대상인”의 개념

“널리 분포하지 않는”은 ISPM 8에 목록화 되어 있는 병해충 상황의 설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요건

1. 일반 요건

공적 방제는 ISPM 1, 특히 식물위생조치의 비차별, 투명성, 동등성 및 병해충위험분석 원칙의 대상이다.

1.1 공적 방제

공적 방제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감염 지역에서의 박멸 및/또는 확산 억제
- 위험지역에서 예찰
- 수입 시 적용되는 식물위생조치를 포함하여, 규제지역 내에서 또는 규제 지역으로 이동과 관련된 제한

모든 공적 방제 프로그램은 의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수입 시 적용되는 동일 목적의 식물위생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제의 필요와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적 방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병해충 예찰이 필요하다. 수입 시 적용되는 식물위생조치는 비차별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아래 section 2.2 참고).

검역병해충에서 박멸과 확산 억제는 억제(suppression)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규제비검역병해충은 재식용 용도에 적용되므로, 억제는, 수용할 수 없는 경제적 피해를 피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1.2 널리 분포하지 않는

“널리 분포하지 않는”은 어떤 지역 안에서 어떤 병해충의 발생과 분포에 관련된 개념이다. 어떤 병해충은 특정 지역에서, 존재하고 널리 분포하거나 또는 널리 분포하지 않거나, 또는 없다고 분류될 수 있다. 병해충위험평가(PRA)에서, 어떤 병해충이 널리 분포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병해충 분류(categorization) 단계에서 수행된다. 일시적(transience)은, 해당 병해충이 정착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널리 분포하지 않는” 개념에 적절하지 않다.

존재하면서 널리 분포하지 않는 검역병해충의 경우, 수입국은 만연 지역과 위험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검역병해충이 널리 분포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그 병해충이 잠재적 분포 지역의 일부분에 제한되어 있고, 이 병해충의 유입 또는 확산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의 위험이 있는, 그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위험지역은 연속되어 있을 필요가 없으며 여러 개의 다른 부분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병해충이 널리 분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위험지역의 설명과 경계설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분포의 구분(categorization)에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다. 이 구분은 시간이 지나면 변경될 수도 있다.

해당 병해충이 널리 분포하지 않는 지역은, 경제적 피해가 적용되는 지역(예, 위험지역)과 동일해야 하며, 그 병해충의 공적 방제 대상 또는 고려 대상 지역이어야 한다. 어떤 병해충의 검역병해충 여부는, 분포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고 공적 방제 대상으로 놓는 것을 포함하여, 보통은 전체 국가 측면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국가 전체보다 일부 지역에서 어떤 병해충을 검역병해충으로 규제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병해충에 대한 식물위생조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그 병해충의 잠재적 경제적 중요성이다. 적절한 경우의 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섬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 또는 다른 경우는, 넓은 국가에서

기후에 의해 특정 작물이 정해진 지역에만 제한된 경우 같이, 병해충의 정착과 확산에 대한 자연 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장벽이 있는 경우다.

1.3 공적 방제를 적용하기 위한 결정

NPPO는, 비용 및 특정 병해충 규제의 이점과, 정해진 지역 내에서 그 병해충을 방제할 기술적, 일반 운영 (logistical) 능력 같은, PRA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존재하나 널리 분포하지 않으면서 잠재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병해충의 공적 방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해당 병해충이 공적 방제 대상이 아니라면 검역병해충 자격이 없다.

2. 특정 요건

충족되어야 하는 특정 요건은, 병해충위험분석, 기술적 정당성, 비차별, 투명성, 시행, 공적 방제의 의무성, 적용 지역과 NPPO 기관과 공적 방제 참여와 관련된다.

2.1 기술적 정당성

국내 요건과 식물위생 수입요건은 기술적으로 정당하여야 하고 비차별적 식물위생조치로 결과되어야 한다.

검역병해충 정의의 적용은 잠재적 경제적 중요성, 잠재적 분포와 공식 방제 프로그램(ISPM 2)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존재하면서 널리 분포 또는 존재하면서 널리 분포하지 않는, 병해충의 구분은 잠재적 분포와 관련하여 결정된다. 이 잠재적 분포는, 그 병해충이 기회가 있으면, 예를 들면, 기주가 존재하고, 기후와 토양 같은 환경적 요인이 좋아서, 정착할 수 있는 지역을 나타낸다. ISPM 11은, PRA를 수행할 때, 정착 및 확산 가능성을 분석하는데 고려해야할 요인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존재하나 널리 분포하지 않는 병해충의 경우, 잠재적 경제적 중요성은 그 병해충이 정착하지 않는 지역들과 연관되어야 한다.

예찰은, 어떤 지역에서 어떤 병해충이 분포하는지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 그 병해충이 널리 분포하는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의 근거로 사용되어야 한다. ISPM 6은 예찰 지침을 제공하고 투명성 조항을 포함한다. 병해충 생활환, 확산 수단과 생식 속도 같은 생물적인 요인은, 예찰 프로그램 설계,

조사 데이터 해석과 널리 분포하지 않는 병해충 구분의 신뢰 수준에 영향을 수도 있다. 어떤 병해충의 특정 지역 내 분포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다. 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정보는, 그 병해충이 널리 분포하지 않는지 여부의 재고려를 필요하게 만들 수도 있다.

2.2 비차별

국내 요건과 식물위생 수입요건 간의 비차별 원칙은 근본적이다. 특히, 수입요건은 수입국 내 공적 방제 효과보다 더 엄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특정 병해충에 대한 국내요건과 식물위생 수입요건 간에는 다음과 같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수입요건이 국내요건보다 엄격하여서는 안된다.
- 국내요건과 수입요건은 동일하거나 동등한 효과를 가져야 한다.
- 국내요건과 수입요건의 의무적인 요소는 동일하여야 한다.
- 수입화물 검사의 강도는 국내 방제 프로그램의 동등한 절차와 동일하여야 한다.
- 위반의 경우, 수입 화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취해진 것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식물위생 활동이 취해져야 한다.
- 국내 공적 방제 프로그램에서 허용치가 적용될 경우, 동등한 수입물에 대해서는 같은 허용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병해충 정도 (incidence)가 우려 허용치를 넘지 않아 국내의 공적 방제 프로그램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수입 화물에서도 병해충 정도가 동일한 허용치를 넘지 않는다면 어떠한 조치도 취하여서는 안된다. 수입 허용치 준수는 일반적으로 반입 검사 또는 정밀검사를 통하여 결정되지만, 국내 화물에 대한 허용치 준수는 공적 방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 국내의 공적 방제 프로그램에서 등급격하(downgrading) 또는 재분류(reclassifying)가 허용된다면, 수입 화물에 대해서도 유사한 선택이 가능하여야 한다.

2.3 투명성

공적 방제의 국내요건과 식물위생 수입요건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되어야 한다.

2.4 시행

공적 방제 프로그램의 국내 시행은 식물위생 수입요건 시행과 동등하여야 한다. 시행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법적 근거
- 운영 이행(operational implementation)
- 평가 및 검토
- 위반의 경우 식물위생 활동

2.5 공적 방제의 의무성

공적 방제는, 관련되는 모든 사람이 필요한 행동을 수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의무적이다. 검역병해충에 대한 공적 방제 프로그램의 범위는 전적으로 의무적이지만(예; 박멸 캠페인을 위한 절차)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한 범위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의무적이다(예; 공적 인증(certification) 프로그램).

2.6 적용 지역

공적 방제 프로그램은 국가적, 준 국가적(sub national) 또는 지방 지역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다. 공적 방제 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은 지정되어야 한다. 식물위생 수입요건은 공적 방제를 위한 국내 요건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야 한다.

2.7 NPPO 권한과 공적 방제 참여

공적 방제는,

- 계약국 또는 적절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NPPO에 의하여 설정 또는 인정(recognized)되어야 한다.
- NPPO에 의해 수행, 관리, 감독 또는 최소한 감사/검토되어야 한다.
- 시행이 계약국이나 NPPO에 의하여 보증되어야 한다.
- 계약국이나 NPPO에 의해 공적 인증이 수정, 종료 상실되어야 한다.

공적 방제 프로그램의 책임과 신뢰성은 계약국에 있다. NPPO 이외의 대리기관(agency)에서 공적 방제 프로그램에 책임이 있을 수도 있으며, 공적 방제 프로그램의 어떤 면은 준국가기관(subnational authority) 또는 사설기관(private sector)의 책임일 수도 있다. NPPO는 자국의 공적 방제 프로그램의 모든 내용을 완전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보충서는 2003년 4월 5차 ICPM에서 채택되었다.

이 보충서는 이 기준의 규정적인 부분이다.

보충서 2: “잠재적인 경제적 중요성”과 환경적 고려를 위한 참고를 포함한 관련 용어의 이해에 대한 지침

1. 목적 및 범위

동 지침은 잠재적인 경제적 중요성 및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배경과 다른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래서 이들 용어가 명확히 이해되고, 그 적용이 IPPC와 ISPMs와 일관되게 한다. 또한 동 지침은, 특히 병해충인 침입외래종 관련 비경작/비관리 식물, 야생 식물, 서식처와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IPPC의 목적과 관련된 특정 경제적인 원칙의 적용을 보여 준다.

동 지침은 IPPC의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한다.

-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가치를 사용한 경제적 용어로 환경적 우려를 설명 가능
-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병해충으로 인한 결과의 유일한 지표가 아님을 확고히 함
- 어떤 지역 내에서 식물, 식물성 산물 또는 생태계에 끼친 경제적 피해를 쉽게 정량화할 수 없는 병해충에 대하여 회원국은 식물위생조치를 채택할 권리를 유지

또한, 동 지침은 병해충과 관련해서 IPPC의 범위가 농업, 원예 및 산림에서 재배되는 식물, 비재배/비관리 식물, 야생 식물, 서식처 및 생태계의 보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배경

IPPC는, 비재배/비관리 식물, 야생 식물, 서식처 및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포함한 병해충의 해로운 영향이 경제적인 용어로 측정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경제적 영향(effects)’, ‘경제적 충격(impacts)’, ‘잠재적인 경제적 중요성’ 및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충격’의 용어에 관한 참고문헌과 IPPC와 ISPMs에서 ‘경제적’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용어의 적용과 IPPC의 중점(focus)에 있어 일부 오해를 초래하였다.

협약의 범위는, 생물다양성의 보존에 대한 중요한 기여를 하는 야생 식물의 보호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IPPC가 상업적으로만 초점을 맞추고 범위가 제한된다는 오해가 있었다. IPPC가 환경적 우려를 경제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못하였다. 이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협약을 포함한 다른 협정과의 일관성 문제를 유발해왔다.

3. IPPC와 ISPMs의 경제적 용어와 환경적 범위

IPPC와 ISPMs에 있는 경제적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정책적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판단이 요구되는 용어:

- 잠재적인 경제적 중요성 (검역병해충 정의에서 사용);
-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영향 (규제비검역병해충 정의에서 사용);
- 경제적으로 중요한 손실 (위험지역 정의에서 사용).

위의 판단을 지원하는 증거와 관련된 용어:

- 경제적 영향을 제한 (식물위생 규정의 정의 및 식물위생조치의 합의된 해석에서 사용);
- 경제적 증거 (병해충위험분석 정의에서 사용);
- 경제적 손실을 야기 (1997년 IPPC 제7조 3항에서 사용);
- 직·간접적인 경제적 영향 (ISPM 11 및 16에서 사용);
- 경제적 중요함(consequences) 및 잠재적인 경제적 중요함 (ISPM 11에서 사용);
- 상업적 및 비상업적 중요성 (ISPM 11에서 사용).

ISPM 11의 2.1.1.5항은 병해충 분류(categorization) 면에서, 그 병해충이 PRA 지역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impact)을 포함하여, 수용할 수 없는 경제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명확한 조짐(indication)이 있어야 한다. 동 기준의 2.3항은, 어떤 병해충의 유입에 대한 잠재적인 경제적 중요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병해충의 영향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2.3.2.2는 상업적인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3.2.4항은 병해충 유입의 비상업적 및 환경적 중요성 평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영향의 어떤 유형은, 쉽게 규명할 수 있는 기준의 시장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충격은 적절한 비시장적 가치평가 방법에 의해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항에서는, 정량적 측정이 실행 가능하지 않을 경우, 해당 평가 부분은, 최소 정성적 분석과 함께 이러한 정보가 PRA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방제 조치의 환경 또는 기타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2.3.1.2항(간접적 병해충 영향)에서 잠재적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분석의 일부로 다루어져 있다. 병해충위험이 수용할 수 없는 경우, 3.4항은 비용-효과 측정, 실행 가능성, 최소한의 무역 제한을 포함한 병해충위험관리 방안의 선택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2001.4월 ICPM은, 현행 IPPC 권한 하에서 환경적 문제를 고려하고 병해충의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과 관련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명확히 되어야 함을 인정하였다:

- 멸종위기에 처한(또는 위협을 받는) 자생 식물종의 감소 또는 멸종
- 핵심(keystone) 식물종(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종)의 감소 또는 멸종
- 자연 생태계의 주요 구성요소가 되는 식물종의 감소 또는 멸종
- 생태계 불안정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식물의 생물다양성에 변화 야기
- 검역병해충이 유입되었을 경우 필요한 방제, 박멸 또는 관리 프로그램으로 인한 결과 및 이러한 프로그램이 생물적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예; 농약 또는 외래 포식자나 기생자)

따라서 식물병해충과 관련하여 IPPC의 범위가 농업, 원예와 산림에서 재배되는 식물, 비재배/비관리 식물, 야생 식물, 서식처 및 생태계의 보호를 포함

하는 것은 명확하다.

4. PRA에서 경제적 고려

4.1 경제적 영향의 종류(types)

PRA에서, 경제적 영향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만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상업적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상품과 서비스가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경제적 분석은 시장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연구보다 훨씬 많은 것을 포괄한다. 경제적 영향이란 용어 사용은 다양한 영향(환경적 및 사회적 영향 포함)이 분석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경제적 분석은 다른 형태의 상품과 서비스로부터 나오는 비용과 이익을 정책 입안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금전적 가치를 사용한다. 이는 금전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정성적과 환경적 분석과 같은 다른 도구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4.2 비용과 이익

어떤 정책에 대한 일반적·경제학적 검증은 그 이익이 최소 비용과 같은 크기일 경우, 그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비용과 이익에는 시장 및 비시장적 면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널리 이해되고 있다. 비용과 이익은 정량화할 수 있는 측정과 정성적 측정에 모두에 의해 나타낼 수 있다. 비시장 상품과 서비스는 정량화하거나 측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식물위생의 목적을 위한 경제적 분석은 비용 및 이익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만 할 수 있으며, 특정 정책의 비용과 이익의 분포가 다른 것보다 반드시 더 좋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원칙상, 비용과 이익은 이것이 누구에게 발생하는 지에 관계없이 측정되어야 한다. 이익과 비용이 어떻게 분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한 결정이 정책적인 선택이라면, 이는 식물위생적인 고려와 합리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비용과 이익이 어떤 병해충 유입의 직접 또는 간접적 결과로서 발생하였는지, 또는 비용이 발생하거나 그 이익이 나타나기 전에 일련의 인과관계인지 고려되어야 한다. 병해충 유입의 간접적 중요성과 관련된 비용과 이익은 직접적

중요성과 관련된 비용과 이익보다 덜 확실할 수도 있다. 흔히, 자연환경에 유입된 병해충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손실 비용에 관한 금전적 정보가 없다. 모든 분석에 있어서 비용과 이익을 산정하는데 관여된 불확실성을 확인하고 설명하여야 하며, 가정(assumption)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5. 적용

어떤 병해충이 잠재적인 경제적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여야만 한다;

- PRA 지역에 유입될 잠재력;
- 정착 후 확산될 잠재력;
- 식물에 대한 잠재적인 해로운 영향, 예를 들면:
 - 작물(예 : 생산이나 품질의 손실),
 - 환경, 예를 들면 생태계, 서식처 또는 종,
 - 기타 특정 가치, 예를 들면 휴양, 관광, 미학

제3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병해충의 유입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는 IPPC에서 인정하고 있는 피해의 한 종류이다. 그래서 위의 3가지 기준과 관련하여, IPPC 체결국들은 환경에 피해를 줄 가능성만 있는 병해충에 대해서도 식물위생조치를 채택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활동은 잠재적 환경 피해의 증거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 PRA에 근거하여야 한다. 환경에 미치는 병해충의 직접 및 간접적 영향을 명시하는 경우, 병해충의 유입으로 인한 피해나 손실의 특성이 PRA에 구체화되어야 한다.

규제비검역병해충의 경우, 병해충 개체군이 이미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 지역으로 유입과 환경 영향은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충격을 고려하는 적절한 기준이 아니다(ISPM 16과 ISPM 21 참조).

*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과 관련하여 IPPC (1997) VII.3항은 정착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병해충에 내려지는 조치는 기술적으로 정당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부록은 참고 목적이며 이 기준의 규정적인 부분은 아니다.

보충서 2에 대한 부록

이 부록은 동 보충서에 사용된 일부 용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clarification)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인 분석(Economic analysis) : 정책 입안자들이 여러 형태의 상품 및 서비스와 비용 및 이익을 비교할 수 있는 측정수단으로서 금전적 가치를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이는 시장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연구 이상을 포괄한다. 경제적 분석은 금전적 가치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수단의 이용을 막지 않는다; 예 : 정성적 또는 환경적 분석

경제적 영향(Economic effects) : 이는 시장 영향뿐만 아니라 환경적 및 사회적 고려사항과 같은 비시장적 영향까지 포함한다. 환경적 영향이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측정은 설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종의 생존 및 웰빙 또는 산림이나 정글의 미적인 가치. 정성적이거나 정량적인 가치 모두가 경제적인 영향을 측정하는데 고려될 수 있다.

병해충의 경제적 충격(Economic impacts of plant pest) : 이는 시장 측정과, 직접적 경제적 용어로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 결과 모두를 포함하지만 이는, 재배되는 식물, 재배되지 않는 식물이나 식물성 산물에 손실 또는 피해로 나타난다.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 : 이는 인류 복지에 미치는 변화의 영향(예 : 생물다양성, 생태계, 관리된 자원 또는 천연자원)에 대한 비용을 측정하는 근거가 된다. 상업적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도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협력적인 행동 (cooperative behavior)에 근거한 다른 종들의 생존과 웰빙을 위한 도덕적 또는 이타적인 관심을 차단하지 않는다.

정성적 측정(Qualitative measurement) : 이것은 질 또는 특성을 금전적 또는 숫자상의 용어 이외의 것으로 나타내는 가치평가이다.

정량적 측정(*Quantitative measurement*) : 이것은 질 또는 특성을 금전적 또는 다른 숫자상의 용어로 나타내는 가치평가이다.

이 부록은 2009년 3-4월 제4차 CPM에서 채택되었다.
이 부록은 참고 목적이며 이 기준의 규정적인 부분이 아니다.

부록 1: 식물위생용어집과 관련된 생물다양성협약의 용어

1. 개요

2001년 이래 IPPC의 범위가, 해로운 식물을 포함하여 일차적으로 환경과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병해충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으로 확대된 것은 명백하다. ISPM 5(식물위생용어집, 이후 용어집으로 약칭)를 검토하는, 용어 기술 위원회는 이 우려되는 분야를 포함하기 위하여 기준에 새로운 용어와 정의의 추가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이전에 다른 국가 간 기구의 용어들에서 있었던 몇몇 경우와 같이,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정의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CBD로부터 사용되는 용어와 정의에 대한 연구 결과, 그들은 IPPC와는 다른 개념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유사한 용어가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CBD 용어와 정의는 이 용어집에 직접 사용될 수는 없었다. 대신 이들 용어와 정의가 IPPC 용어와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용어집의 부록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부록은 CBD 또는 IPPC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2. 제시 (Presentation)

고려된 각각의 용어와 관련하여 CBD 정의를 먼저 제공하였다. 그 옆에 "IPPC에서의 설명"이 있고, 항상 그랬듯이 용어집의 용어(또는 용어집에서 파생된 형태)는 **볼드체**로 표시하였다. 이 설명은 CBD 용어를 또한 포함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역시 **볼드체**로 표시하고 용어 뒤에 "(CBD)"라고 기재했다. 설명은 본 부록의 주 내용을 차지한다. 각 정의에는, 일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추가의 명확함을 제공하기 위한 주석이 따른다.

* 이 문서에서 논의된 용어와 정의는 CDB 회원국(CBD 사무국)에 의해 외래침입종에 대한 논의의 결과이다.

3. 용어

3.1 “외래종”

<i>CBD 정의</i>	<i>IPPC에서의 설명</i>
과거 ¹ 혹은 현재의 자연 분포의 외부로 유입된 종이나 아종(亞種), 또는 하위 분류군(lower taxon); 생존하고 그 후 번식하는 그러한 종의 일부 또는 생식체(gametes), 종자, 알이나 영양체(propagules)를 포함	외래²종(alien species)(CBD) 은 해당 지역 의 고유종이 아니며(non-indigenous), 인간의 작용(agency) ⁵ 에 의해 그 지역 으로 들어온⁴(entered) 모든 생육 단계의 생물체 개체 ³ , 개체군 또는 그 생물체의 살아있는 부분

주석:

¹ IPPC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과거 및 현재"의 분포와 관련된 자격(qualification)은 IPPC의 목적에는 적절하지 않다. 해당 종이 현재에 존재한다면, 과거에 존재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CBD 정의에서 "과거"라는 단어는 아마도 해당 종이 (최근) 멸종한 지역으로 재유입되는 것을 허용하는 듯하며, 재유입된 종은 외래종으로 고려되지 않는 듯하다.

² “외래(alien)”는 해당 생물체의 자연적 범위(natural range)와 비교한 위치와 분포만을 설명한다. 이는 이 생물체가 해롭다는 것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³ CBD 정의는 특정 시간대에 개별체(individuals)의 물리적 존재를 강조하는 반면, 발생(occurrence)에 대한 IPPC 개념은 일반적인 그 종(taxon)의 지리적 분포와 연관되어 있다.

⁴ CBD 목적에서는 외래종은, 토종 (native) 분포가 아닌, 해당 **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아래 **유입**을 참조). IPPC는 우려 **지역**에 아직 분포하지 않은 생물체(즉, **검역병해충**)에 대하여 더 우려한다. "외래(alien)"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으며, "exotic", "비고유의(non-indigenous)" 또는 “비토종(non-native)”이 ISPMs에서 사용된다.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이들 중 하나만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반대말인 “고유의(indigenous)”와 같이 쓰일 수 있으므로, “비고유의(non-indigenous)”가 적절할 것이다. “exotic”은 번역에 문제가 있으므로 적당하지 않다.

⁵ 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지역에 유입된 어떤 비고유의 종은 외래종 (alien, CBD)이 아니다. 이는 자연적인 범위를 확장한 것일 뿐이다. IPPC에서는 이러한 종도 여전히 잠재적 검역병해충으로 고려된다.

3.2 “유입”

<i>CBD 정의</i>	<i>IPPC에서의 설명</i>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건 인간의 작용으로 인한 자연적 범위 (과거 혹은 현재) 밖의 외래종(alien species) ⁶ 의 이동. 이러한 이동은 한 국가 내에서 또는 국가 간, 국가 관할지역 ⁷ 을 넘을 수 있음	해당 종이 인간작용에 의한 이동을 통하여, 고유 <u>지역</u> 에서 (해당 종이 고유한 <u>지역</u> 으로부터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그렇지 않은 <u>지역</u> 들을 거쳐 지속적인 이동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 ⁸ 으로 비고유 <u>지역</u> 으로 들어옴

주석:

⁶ CBD의 정의는 유입(introduction(CBD))이 외래종(alien species (CBD))을 우려하고 있으며 그래서, 해당 종이 그 지역에 이미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CBD에 의한 다른 문서들에 근거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며, 그리고 지역에 고유하지 않은(non-indigenous) 종이 처음 들어 오게 되는 것이 유입(introduced (CBD))되는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CBD는 해당 종이 여러 번 유입(introduced(CBD))될 수 있으나, IPPC는 이미 정착한 해당 종은 다시 유입될 수 없다.

⁷ "국가 관할권을 넘은 지역" 문제는 IPPC와는 무관하다.

⁸ 간접 이동의 경우,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모든 이동이 유입(introduced (CBD))인지 (예를 들어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인간의 작용을 통해) 또는 어떤 경우에는 자연적 확산(spread)을 통할 수도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에서 기술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어떤 종이 하나의 지역에 유입(introduced (CBD))된 뒤 인접한 지역에 자연적으로 확산된 경우, 이러한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경우 간접 유입(introduced (CBD))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종은 인접 지역에서는 자연적으로 침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종(alien species (CBD))이다. IPPC의 맥락에서 보면, 자연적 이동이 일어난 중간 국가는 자연적 이동을 제한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관련 수입국에서 이에 대응하는 식물위생조치를 수립했다면

의도적 혹은 의도적이지 않은 유입(introduced (CBD))을 방지할 의무는 있을 수 있다.

3.3 “침입 외래종”

CBD 정의	IPPC에서의 설명
유입 및/또는 확산이 생물 다양성 ^{10,11} 을 위협 ⁹ 하는 외래종(alien species)	침입 ¹² 외래종(invasive alien species (CBD))은 정착 또는 확산에 의해 식물 ¹³ 에 해가 되거나, 혹은 위험분석(risk analysis (CBD)) ¹⁴ 을 통해 식물에 잠재적으로 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 외래종(alien species (CBD))

주석:

⁹ “위협(threaten)”은 IPPC 언어와 바로 동등한 것은 없다. IPPC의 병해충 정의는 “해로운(injurious)”를 사용하지만 검역병해충의 정의는 “경제적 중요성”을 주목한다. ISPM 11은 검역병해충이 식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생태계의 요인을 통하여) 해로운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 반면 용어집의 보충서 2의 “경제적 중요성”은 작물 또는 환경 또는 다른 특별한 가치 (위락, 관광, 경관)에의 해로운 영향에 따른다.

¹⁰ 침입외래종(invasive alien species, CBD)은 “생물다양성”을 위협한다. 이는 IPPC의 용어가 아니며, IPPC에 대응하는 범위(scope)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러므로 “생물다양성”은, 농업생태계에서 경작되는 식물과, 수입되어 산림, 쾌적한 시설(amenity) 또는 서식지 관리를 위해 심겨진 비고유 식물, “사람이 만든” 또는 아닌 서식지의 고유 식물의 보존성(integrity)까지 확대된 넓은 의미를 가져야 한다. IPPC는 어떤 경우에 속하든 식물을 보호하지만, CBD의 범위가 이렇게 넓은 지는 명확하지 않다: “생물다양성”의 일부 정의들은 훨씬 좁은 관점을 가진다.

¹¹ CBD에 의해 가용한 다른 문서에 기초하면, 침입외래종은 또한 “생태계, 서식지 또는 종”을 위협한다.

¹² CBD 정의와 이에 대한 설명은 침입외래종 전체 용어를 다루며, “침입”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

¹³ IPPC의 내용은 식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식물과 관련 없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도 있는 것이 명확하며, 그래서 IPPC와 관련 없는 침입외래종 (CBD)도 있다. IPPC는 식물성 산물 또한 우려하나, CBD의 범위에서 식물성 산물을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로 고려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¹⁴ IPPC에서는 위험지역에 한번도 침입한 적이 없는 생물체(organisms)도 병해충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잠재적으로 식물에 해롭다고 고려될 수 있다.

3.4 “정착”

<i>CBD 정의</i>	<i>IPPC에서의 설명</i>
새로운 서식지에서 계속 생존할 가능성이 있는 살아있는 자손 ¹⁶ 을 성공적으로 생산하는 외래종(alien species)의 과정 ¹⁵	<u>들어간 지역</u> 내의 <u>서식지</u> 에서 성공적인 번식에 의한 <u>외래종(alien species(CBD))의 정착</u>

주석:

¹⁵ **정착(establishment(CBD))**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자손이 지속적 생존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면 자손(offspring) 뒤에 쉼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단 한 세대의 번식이 **정착(establishment[CBD])**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CBD의 정의는 "가까운 장래의 지속(perpetuation for the foreseeable future)"에 대한 IPPC 개념을 표현하지 않는다.

¹⁶ "자손(offspring)"이 영양적으로 번식하는 생물체(많은 식물들, 대부분의 진균, 다른 미생물체)에 어느 정도 적용되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 “지속(perpetuation)”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IPPC는 유성생식과 개별체의 복제에 관한 문제를 모두 피한다. 생존하는 것은 종(species) 전체이다. 오래 사는 개체가 성숙기까지 성장하는 것도, 가까운 장래까지의 지속(perpetuation)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 비고유(non-indigenous), 식물의 재배장(plantation))

3.5 “의도적 유입”

<i>CBD 정의</i>	<i>IPPC에서의 설명</i>
인간에 의한 외래종(alien species)의 자연범위 밖으로의 의도적 이동 그리고/또는 ¹⁷ 방사	환경 ¹⁸ 으로의 방사 를 포함한, 비고유 종(non-indigenous species)의 어떤 지역 으로의 의도적 이동

주석:

¹⁷ CBD 정의의 “그리고/또는”은 이해하기 어렵다.

¹⁸ 대부분의 식물위생 수입규제 체제 하에서는 규제병해충의 의도적인 도입은 금지된다.

3.6 “Unintentional introduction: 비의도적 유입”

<i>CBD 정의</i>	<i>IPPC에서의 설명</i>
의도적이지 않은 다른 모든 유입	감염 혹은 오염 된 교역되는 화물 , 또는 여행자의 수하물, 차량, 인공수로와 같은 경로 를 포함하는 다른 인간의 활동에 의한 비고유 종의 들어옴(entry) ¹⁹

주석:

¹⁹ 규제병해충의 비의도적인 유입을 방지하는 것이 식물위생 수입규제 제도의 중요한 부분이다.

3.7 “위험분석”

<i>CBD 정의</i>	<i>IPPC에서의 설명</i>
1) 과학적 근거의 정보를 이용한 외래종(alien species)의 유입과 정착 가능성의 결과 ²⁰ 에 대한 평가 (예: 위험 평가), 그리고 2) 사회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고려 ²¹ 를 유념하여 이들 위험의 감소 또는 관리(예: 위험 관리)를 위해 실행할 수 있는 조치의 확인	위험 분석(risk analysis(CBD)) ²² 은 1) 특정 지역 에 들어간(enter) 외래종(alien species(CBD)) 의 해당 지역 ²³ 내의 정착 및 확산 개연성 평가, 2) 잠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와 관련된 평가, 그리고 3) 이러한 정착 및 확산 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조치의 평가와 선택

주석:

²⁰ 어떤 종류의 결과가 고려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²¹ 위험분석(risk analysis(CBD))의 과정 중 어떤 단계에서 사회-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고려를 해야 하는 지(평가 중인지 혹은 관리 중인지 혹은 둘 다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ISPM 11 또는 ISPM 5의 보충서 2과 관련해서는 어떤 해석도 제공되지 않는다.

²² 이 설명은 IPPC의 병해충위험분석(pest risk analysis)에 대한 정의보다는 병해충위험평가(pest risk assessment)와 병해충위험관리(pest risk management)의 정의에 기초한다.

²³ 위험분석(risk analysis (CBD))이 들어오기(entry) 전에 실시되는 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면, 유입 개연성과 유입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평가되고 선택된 조치 또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위험분석(CBD)은 더 이상의 유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구명하는 것으로 가정될 수 있고 (CBD에 의해 가용한 다른 문서에 근거하여), 그렇다면 병해충위험분석에 더 가까이 관련된다.

4. Other concepts: 기타 개념

CBD는 다른 용어에 대해 정의를 제공하지 않으나, IPPC와 CBD에서 같은 방면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혹은 IPPC에 의해 구분되지 않는, 다양한 다른 개념들을 사용한다.

- 국경 통제
- 검역 조치
- 증명 책임
- 자연적 범위 또는 분포
- 예방적 접근
- 임시 조치
- 통제 (control)
- 법적 조치 (statutory measures)
- 규제 조치 (regulatory measures)
- 사회적 영향
- 경제적 영향

5. 참고자료

CBD. 1992.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Montreal. CBD,
CBD. *Glossary of terms* (<http://www.cbd.int/invasive/terms.shtml>,
accessed November 2008)